

국 민 안 전 처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교차사용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정선군, 양구군

관 련 자 ① ○○○○과(전 ○○○○사업소○○본소) 지방○○○○○ ○○○

② 0000○○ ○○○○○(전 ○○지소) 지방○○○○○ ○○○

③ 0000○○ ○○○○○(전 ○○지소) 지방○○○○○ ○○○

④ ○○○○○본부(전 ○○지소)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7. 26. 부터 2015. 4. 16.까지, 지방○○○○○ ○○○은 2014. 1. 27.부터 2015. 4. 16.까지, 지방○○○○○ ○○○은 2013. 4. 30. 부터 2014. 10. 24.까지, 지방시설주사보 석부군은 2012. 1. 26.부터 2014. 3. 12.까지, 각각 강원도 ○○○○사업소 ○○본소, ○○지소, ○○지소, ○○지소에 서 근무하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 ○○○○사업소에서는 2013~2016년까지 16개소의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지침상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계획 변경 대상>

1. 보조금의 교부결정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설계변경 등
2.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3.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비 규모 변경
4.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을 당해 사업의 익년도 추진 사업물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제4항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계획 변경 대상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에만 사업비의 조정이 가능함에도

강원도 ○○○○사업소 등 4개 지소에서는 단순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표]와 같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

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1개월 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표] 보조사업 경비 변경 현황

구분 (지구명)	확보예산 (백만원)	배분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잔액 사용처 (백만원)	비고
'13~14 ○○	1,320	△13	1,307	○○지구로 13 배분	○○ 지소
'13~14 ○○	2,000	13	2,013	○○지구에서 13 받음	
'15년 ○○	500	△44	456	○○ 1지구로 44 배분	
'15년 ○○	300	△36	264	○○ 1지구로 36 배분	
'15년 ○○1	608	50	658	○○(36)와 ○○3(14)에서 받음	
'15년 ○○	610	70	680	○○(45)와 ○○3(25)에서 받음	
'15년 ○○3	120	△39	81	○○1(14)와 ○○(25) 배분	
'12~13 ○○2	2,993	△46	2,947	○○2지구로 46 배분	○○
'13~14 ○○4	2,000	△156	1,844	○○2지구로 156 배분	
'14~15 ○○2	950	202	1,153	○○2(46), ○○4(156)에서 받음	
'13~14 ○○19	1,677	△196	1,481	○1지구로 196 배분	○○
'13~14 ○1	2,297	196	2,493	○1지구에서 196 받음	
'13년 ○○	1,900	△11	1,889	○○지구로 11 배분	○○
'13년 ○○	600	11	611	○○지구에서 11 받음	
'15년 ○○	1,000	431	1,431	○○(313), ○○(118)에서 받음	
'15년 ○○	1,000	△180	820	○○(118), ○○(62)로 배분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정선군수, 양구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을 국민안전처 승인없이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